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입자 사고예방 활동 시 지원 근거 마련 등〉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5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	3
2.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가입자 의견 청취 규정 마련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4. 22.
3.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IV. 검토의견

1.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

개정안은 국가 등이 농어업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u><신설></u>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의 목적이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동 법에서 국가와 지자

체가 사고 예방 활동을 의무 시행하도록 정하는 것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사고예방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조의2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낮추는 방재시설을 설치한 농지·과수원의 경우 농가당 3~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방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운영 중임.

【 방재시설별 할인 현황(예시: 사과) 】

방재시설		할인율
방풍림		5%
지주시설	트렐리스-2선식	7%
	트렐리스-4/6선식	7%
	개별지주	7%
방풍망	측면 전체설치	10%
	측면 일부설치	5%
방충망		20%
방조망		5%
방상팬		25%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25%

* 중복 할인 시 최대 30%까지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 보조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지원
- ▶ (지원대상)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미참여 농가도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 (지원내용) 고품질생산 지원(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생산비·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재해예방시설(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등)*
 - *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 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햇빛차단망, 다목적망 등 재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 (지원예산) 155,626백만원(국비 31,125, 지방비 46,688, 자부담 77,813)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개정안은 먼저, 농어업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 뿐 아니라 국가 등도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28조¹⁾에서 정부가 농어업인의 재해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1)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미세살수장치, 방풍망 등 방재시설 설치뿐이고 이 경우 보험료 할인은 물론 설치비용도 보조(50%)해주고 있으나,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을 사고예방 활동으로 추가 인정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즉,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한 보험료의 할인과 관련 비용의 지원 등은 해당 활동으로 인해 사고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경우 가능한데, 농어업경영의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과 사고발생 확률 간의 인과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가입자 의견 청취 규정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비율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	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보험사) 및 보조금수혜자(농가)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비율을 매년 달리 설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점을 고려 시 보험료의 지원비율 산정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²⁾에서 정부의 50%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34~45%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평균 1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 】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34~45%	86~95%	5~16%(평균 12.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³⁾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Ⅱ. 주요내용

3.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50% 보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이 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50%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보험료 지원비율은 매년 보조금 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